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4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환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 관련 용어 정의 명시(안 제2조)
- 나.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처리방안 신설(안 제5조의3)
-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기타 중복표현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마. 별지 서식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2)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7. 16.~2026. 8. 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5조의2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

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5.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전의 제2조)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상품권의 종류**”로,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상품권의 권면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각각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의2(중전의 제3조의2)의 제목 “(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를 “(상품권의 자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고,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후단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구의”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을 “(상품권의 잔액의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을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포사랑상품권 유통”을 “상품권 유통”으로,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을 “상품권으로 지급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으로,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을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포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사 업 장 지 소 재 지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가맹점 정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등록 및 가맹점 정보 관리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 시에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마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록 및 가맹점 정보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 시에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 예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마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u> <u>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u> <u>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u>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5.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

제5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구청장-----

----- 상품권-----
-----.

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

-----.

③ -----

----- 상품권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상
품권의 종류 -----
상품권의 권면금액 -----
-----.

⑤ 상품권 -----
-----.

----- 상품권 -----
-----.

⑥ 상품권 -----
- 다음 각 호와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4. ----- 상품권-----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

----- 상품권-----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사용자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
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
한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
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단서 신설>

의 계좌로 환급하고,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부담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
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
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
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
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후단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
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
으로 귀속한다.

<삭 제>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

--.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
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3. (생략)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① (생략)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

본다.

② -----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3. (현행과 같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 법 제8조제1항-----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 --
-----.

제8조(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2항-----
상품권-----

-----.

제9조(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
----- 상품권 유통 -----

----- 상품권으로
지급할 -----.

② -----
- 상품권 -----

-----.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조의2 (생 략)

제8조(판매대행점 · 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 · 충전 · 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 유통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10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

-----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

----- 상품권의 발행 · 유통 · 시스템 -----

-----.

② -----
- 판매대행점 -----

-----.

③ -----
--- 상품권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 조문: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신설
- 비용발생 요인: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의 세외수입 미귀속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시효 만료 상품권의 낙전 규모는 상품권 구매자의 사용 추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높은 불확실성 및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허준필
연 락 처	02-3153-8576